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4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운희)

가. 제안사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·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12조(위탁의 취소) 4호, 5호 삭제
 - 4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
 - 5.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·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2조(위탁의 취소) 4호, 5호 삭제
 - 4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
 - 5.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탁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</p> <p>5.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</p>	<p>제12조(위탁의취소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규제 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

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